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나. 발 의 자 : 이갑선 의원외 10인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3월 29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4월 5일

제12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 갑 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세대,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함

다. 주요내용

- “저소득계층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세대(안 제2조)

-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0,000원 미만세 대로서 만 65세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세대, 모·부자세대(안 제3조)
-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 단 중에서 대상자 선정 (안 제4조)
-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(안 제8조)

라. 참고사항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
- 노인복지법 제4조
-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
- 장애인복지법 제9조
- 모·부자복지법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제정 조례안은 노령,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 고있는 저소득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혜택을 누 릴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임.
- 주요 제정내용은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으로서 보험료 부과금 액이 월 10,000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범위로 하고 지원대상은 구미시 지역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, 등록 장애인 세대, 모·부자 세대로 하였음
 - 대상자 선정은 시장이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 소득계층 명단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보험료는 보험 공단에서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토록 하였음

-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키 위하여 의원 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